


에르메스 Hermes 켈리백, 버킨백 관련 패러디 제품 "Fake For Fun" 부정경쟁행위 인정

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7다217847 판결



원고들의 이 사건 상품표지	피고들 제품
	



나. 소송의 경과

이 사건 부경법 쟁점과 의견서

	제2조 1호 (가)목 (상품주체 혼동행위)	제2조 1호 (다)목 (식별력·명성 손상행위)	제2조 1호 (차)목 (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)
제1심	否定	否定	肯定
원심	否定	否定	否定

3. 판결의 의의

▣ 명품 가방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후 창작적 도안을 부가한 행위가 성과물도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

-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품 가방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가 패션잡화 분야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차)목[현 (카)목]을 인정하여 향후 핸드백, 패션업계에 개발 실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

첨부: 대법원 보도자료

지재권분쟁, 침해대응/감정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대응, A~Z 수행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